



# 산업통상자원부



수신자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 
(경유)

제목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점검결과 통보

1. 우리부는 추석명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기강 이행실태 및 행동강령 점검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.

- 아 래 -

가. 점검기간: `20.9.28.~`20.10.8.

나. 점검반 : 감사담당관실 3개반(7명) 편성·운영

다. 점검사항 :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위반, 행동강령 위반 등 기강해이 사례

2. 이와 관련, 귀 기관에 대해 실시한 공직기강 점검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, 지체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,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우리부 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지적내용 및 처분요구사항 1부.  
 2.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요령. 1부  
 3.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절차안내문(적극행정 면책) 1부.  
 4.조치결과 제출 양식 1부. 끝.

<실지감사 시 적극행정면책 신청 안내>

자제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사규정 서식의 '적극행정면책 신청서'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
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

주무관

엄선빈 과장

10/16  
조택연



협조자

시행 감사담당관-2378 (2020.10.16) 접수 감사팀-1812 (2020.10.16)

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(어진동, 산업 / eomsb@motie.go.kr  
통상자원부)

전화 044-203-5425 전송 044-203-4788 / eomsb@motie.go.kr / 비공개(5)

## 주무부처(산업통상자원부) 감사 지적사항

- 감사제목 :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점검결과 통보
  - 감사기관 : 산업통상자원부
  - 감사기간 : '20. 10. 5.

기관명	지적내용 및 처분 요구사항
한국석유관리원 ●●●●●본부	<p>○ 보안문서 관리 부적절 (시정요구)</p> <p><b>1. 현황 및 판단기준</b></p> <p>한국석유관리원(이하 “관리원”이라 한다)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보안업무에 대한 처리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보안업무규정을 제정, 운용하고 있음.</p> <p>이 규정 제35조(비밀의 보관단위)에 따르면 비밀은 일반 문서나 자재와 혼합할 수 없으며 제36조에 의거 파괴나 휴대가 용이하지 않은 금고 또는 2중 철제 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함.</p> <p><b>2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</b></p> <p>그런데 관리원 ●●●●●본부는 비밀과 대외비를 일반문서와 혼재하여 일반 캐비닛에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바, 규정에 따라 별도의 비밀 및 대외비 캐비닛을 구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.</p> <p><b>조치할 사항</b>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 및 대외비를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관리하시기 바람.</p> <p>(시정요구)</p>